

	<b>성인학습자학사운영규정</b>	규정번호	3-4-29
		제정일자	2023.09.01.
		개정일자	2024.06.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교무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라 성인학습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 평생교육체제의 성인학습자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학사운영 일반

제3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학기 및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기 조정의 경우에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학기개강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할 수 있다.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중학기제, 다학기제, 실습학기제, 계절학기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업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최소 2년으로 한다.

② 모집단위의 수업연한 변동으로 인한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필요시 총장이 기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장 학적관리

제6조(전과) ① 본교 학칙 제32조(전과)를 따른다.

② 전과는 학과(전공) 구분 없이 허용하되 성인학습자 소속 학부(과)로 한정하며, 성인학습자 학부로 전입할 경우 성인학습자의 입학자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휴학) 본교 학칙 제33조(휴학)를 따른다.

제8조(복학) 본교 학칙 제34조(복학)를 따른다.

제9조(자퇴) 본교 학칙 제35조(자퇴)를 따른다.

제10조(제적) 본교 학칙 제36조(제적)를 따른다.

## 제4장 교과 및 수업

제11조(교육과정) ① 학칙 제37조(교육과정) 제2항에 준하여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 중 교양은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상 필수, 선택, 기초, 융합 등이 필요 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 개발은 성인학습자 친화형 지식·이론, 직무역량 및 현장 중심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성인학습자(전공)간 성인친화형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융합전공교과목및마이크로디그리운영지침에 따른다.
- ④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업방법) ① 학칙 제39조(수업 및 교수시간)에 따라 수업은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주간, 야간, 주말, 원격교육, 현장실습 수업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원격교육의 개설 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대학 “원격교육운영규정”과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수업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칙시행세칙 제12조(수강신청)에 따라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 ② 성인학습자 학부내에서 타 학과 전공과목 수강신청 학점은 제한 두지 않으며,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한다.
- ③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 운영에 따른 수강학점은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집중학기제) ① 집중학기제는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이 성인학습자내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② 직전학기(계절학기 제외)에 1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③ 집중학기제는 1학기, 2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2회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 ④ 집중학기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집중학기제 신청서를 수강신청 시작 일주일 전까지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⑤ 집중학기제를 신청한 학기 및 학년도는 본 대학 학칙시행세칙 제12조(수강신청)에서 정한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집중이수제) ① 학칙 제 40조(집중수업) ②항에 따라 효율적인 학업 이수를 위하여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하는 수업과 달리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집중이수제는 학과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③ 집중이수제는 4주, 8주, 10주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 시작 시점을 달리하고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④ 집중이수제는 학과의 신청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한다.
- ⑤ 집중이수제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출석인정) 본교 학칙 제43조(출석인정)를 따른다.

제17조(학점인정) ① 성인학습자 입학한 학생은 학칙44조(학점인정) 및 학칙44조의2(선행학습 경험인정(RPL)학점인정)에 근거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선행학습학점인정제(RPL)는 성인학습 재직자의 입학전·후 근무경력, 학습경험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③ 선행학습학점인정제(RPL)의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수강신청 기준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선행학습경험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행학습경험인정규정에 따른다.

### 제5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18조(학업평가) 본교 학칙 제45조(학업평가)를 따른다.
- 제19조(성적평가) 본교 학칙 제46조(성적평가)를 따른다.
- 제20조(성적의 취소) 본교 학칙 제47조(성적의 취소)를 따른다.
- 제21조(학사경고) 본교 학칙 제48조(학사경고)를 따른다.
- 제22조(졸업 및 수수료) ① 본교 학칙 제49조(졸업 및 수수료)를 따른다.
- ② 학칙시행세칙 제45조(졸업)기준에 따른다. 다만, 학점인정등으로 졸업학점이 충족될 경우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조기졸업 학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장 등록금 및 장학금 등

- 제23조(등록금) 등록금은 학점단위로 정한다. 학점당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24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본 대학 「장학규정」에 따른다.
- ② 사업단의 예산규모에 따라 학습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장학금 지급 기준과 절차등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5조(상벌) 학생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생상벌규정을 따른다.

### 제7장 기타

- 제2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